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7호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4 0 2 호 전통시장 인정 공고	2
○ 공	고 제 1 4 0 5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고잔동 소2-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3
○ 공	고 제 1 4 0 7 호 어선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2
○ 공	고 제 1 4 0 8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14
○ 공	고 제 1 4 0 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만의골지구 소3-2호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33
○ 공	고 제 1 4 1 1 호 과년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39
○ 공	고 제 1 4 1 3 호 보상계획열람공고(고잔동 305-2번지 일원(소1-5호선) 도로개설 공사)	41
○ 공	고 제 1 4 1 5 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46
○ 공	고 제 1 4 1 6 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48
○ 공	고 제 1 4 1 7 호 인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신청 공고	50
○ 공	고 제 1 4 1 9 호 보상계획열람공고(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중로 3-307호선))	52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1 9 호 지방의회 청렴도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57
○ 의 회 사 무 국 공 고	제 2 0 호 휴대전화 사용료 반납액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58
○ 보 건 소 공 고 제	4 0 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59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02호

전통시장 인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8월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전통시장 인정사항

- 시 장 명: 남동산업용품상가
-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7, 4-19(고잔동)
- 대 표 자: 허재천
- 시장규모: 토지면적 15,387㎡ / 연면적 40,928.3㎡
- 인 정 일: 2017. 8. 1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생활경제과(☎032-453-2662)로 문의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0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고잔동 소2-2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7-53호(2017.5.12.)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 고잔동 소2-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또는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8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65-1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2-2호선)
 - 명 칭: 고잔동 365-1번지 일원(소2-2호선) 도로 개설공사
- 사업규모
 - 소로2-2호선 B=8.0m, L=500.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실시계획 고시일 ~ 2017.12.31.
 - (변경)실시계획 고시일 ~ 2018.12.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365-19	장	54	54	김*윤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층호 (고잔동)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2		310-11	도	633	633	오*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연립 *동 ***호				
3		365-16	장	12	12	한****주식 회사	인천 서구 마중1로 ** (오류동, ***** *블럭 *롯데)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4		365-18	도	90	90	국	국토교통부				
5		365-17	장	6	6	주***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6		364-9	도	116	116	백*분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300분의40
						백*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300분의40
						백*선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번길 *(송림동)				300분의44
						백*용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번길 **, ***동***호(**동,*****)				300분의44
						백*학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번길*(**동)				300분의44
						백*일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번길*(**동)				300분의44
						백*선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번길*(**동)				300분의44
7		363-8	도	5	5	인천광역시 남동구					
8		364-11	묘	4	4	정*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9		586-57	도	496	496	국	국토교통부				
10		364-10	대	1	1	백*철	인천 부평구 부평동 ***-* **아파트 *동 ***호				
11		312-15	도	362	362	국	국토교통부				
12		362-15	도	195	195	국	국토교통부				
13		362-12	도	2	2	국	국토교통부				
14		353-4	도	9	9	인천광역시 남동구					

15		359-17	도	13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16		359-18	대	3	3	정***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 *층 (고잔동)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지상권	
17		359-21	장	3	3	최*석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아파트 ***-***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국**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근저당권	
18		359-20	도	482	482	오*제	인천 남동구 고잔동 ***-*				
19		341-27	도	100	100	오*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연립 *동 ***호				
20		295-3	도	14,520	242	인천광역시					
21		341-20	도	1	0.4	인천광역시					
22		341-24	도	85	85	오*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연립 *동 ***호				
23		341-22	도	426	426	오*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연립 *동 ***호				
24		476-3	도	416	312	오*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연립 *동 ***호				
25		476-13	도	132	132	오*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연립 *동 ***호				
26		462-21	도	3	3	박*익	인천부 송현리 **				미등기
27		457-12	도	1,211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28		358-12	도	83	83	국	국토교통부				
29		341-23	도	9	9	오*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 ***-** ***연립 *동 ***호				
30		339-18	대	7	7	백*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 (고잔동)	중***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근저당권	
31		339-19	대	27	27	오*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아파트 ***동 ***호				
32		339-16	대	7	7	민*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102번길 ** (고잔동)	남** ****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근저당권	
33		339-17	대	8	8	이*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 ****동 ***호 (상동, **마을)	주*** ****은행	서울 중구 청계천로 ** (*동)	근저당권	
34	변경	339-2	도			오*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동 ****호(**동,*****아파트)				
35	변경 없음	586-59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36	변경 없음	477-8	도	103	103	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				
37	변경 없음	477-7	도	11	7	인천광역시 남동구					

38	변경 없음	477-2	도	45	45	오춘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				
합계					4,158.4						

☐ **지장물 조서(변경있음)**

일련 번호	구분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소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1	변경없음	365-17	담 장	블록(H=2.0m)	24.0㎡	(주)코리아****레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	
			대 문	철재	1식			
			가 추	파이프 판넬	1식			
			천 막	파이프 천막	1식			
2	당초	364-9 586-57	계근대(저울)	35ton	1식	백*목	인천 남동구 은봉로 288, ***동 ****호(논현동, *****)	
			담 장	함석(H=2.0m)	31.0㎡			
			대 문	철재함석	1식			
2	변경	364-9 586-57	계근대(저울)	35ton	1식	백*목	인천 남동구 은봉로 288, ***동 ****호(논현동, *****)	
			담 장	함석(H=2.0m)	35.0㎡			변경
			대 문	철재함석	1식			
3	변경없음	364-9 364-4	가 옥	블록, 함석	72.4㎡	백*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아파트 *동 ***호	
			창 고	샌드위치판넬 함석	5.8㎡			
			담 장	함석(H=2.0m)	28.0㎡			
			담 장	콘크리트조립식(H=1.4m)	67.2㎡			
			대 문	철재	1식			
			살구나무	20년생	1주			
			강 나 무	30년생	1주			
			유 실 수	15년생	1주			
			동백나무	30년생	1주			
4	변경없음	312-15	가 옥	벽돌, 함석	46.1㎡	이*구	인천 남동구 고잔동 ***	

5	당초	312-15	가 옥	블록, 기와	59.4㎡	장*순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마 트	블록, 기와	12.6㎡			
			마 트	블록, 함석	17.6㎡			
			미 용 실	블록, 함석	14.4㎡			
			창 고	블록, 함석	20.7㎡			
			담 장	블록(H=1.6m)	8.8㎡			
			담 장	콘크리트조립식(H=1.6m)	25.9㎡			
			간 판	철재 및 회전식	3식			
			영업권	미니마트, 영미용실	2식			
			측백나무	30년생	1주			
			단풍나무	30년생	1주			
			감 나 무	25년생	2주			
			cctv		1식			
5	변경	312-15	가 옥	블록, 기와	59.4㎡	장*순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마 트	블록, 기와	12.6㎡			
			마 트	블록, 함석	17.6㎡			
			미 용 실	블록, 함석	14.4㎡			
			창 고	블록, 함석	10.6㎡			
			담 장	블록(H=1.6m)	8.8㎡			
			담 장	콘크리트조립식(H=1.6m)	25.9㎡			
			간 판	철재 및 회전식	3식			
			영 업 권	미니마트, 영미용실	2식			
			측백나무	30년생	1주			
			단풍나무	30년생	1주			

			감 나 무	25년생	2주			
			cctv		1식			
			마당(바닥)포장	콘크리트	37.8㎡			추가
			장독대	콘크리트	6㎡			추가
			냉온수기 보관함	콘크리트 및 블록	1.5㎡			추가
6	변경없음	358-2	미 용 실	블록, 함석	32.0㎡	김*복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 (고잔동)	
			영업권	(고잔미용실)	1식			
7	당초	341-23	화 장 실	블록, 슬라브	2.7㎡	오*제	인천 남구 학익동 ***-*, ***아파트 **~***	
			담 장	블록(H=1.6m)	20.0㎡			
			대 문	철재	1식			
7	변경	341-23	화 장 실	블록, 슬라브	2.7㎡	오*제	인천 남구 학익동 ***-*, ***아파트 **~***	
			담 장	블록(H=1.6m)	1.2㎡			변경
			대 문	철재	1식			
8	변경없음	358-12	사 무 실	블록, 함석	56.6㎡	최*호	인천 남동구 예교중앙로156번길 *-**, ***호 (논현동)	
			식 당	블록, 함석	111.8㎡			
			창 고	컨테이너	18.0㎡			
			부 엽	블록, 함석	11.3㎡			
			냉 장 고	샌드위치판넬	8.8㎡			
			담 장	블록(H=1.8m)	37.8㎡			
			대 문	목재	1식			
			간 판	철재	1식			
			영업권	(새집영양탕)	1식			
9	변경없음	339-22	담 장	함석(H=2.4m)	18.0㎡	백*일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 54번길 ** (고잔동)	
			담 장	웬스(H=2.0m)	2.2㎡			

			대 문	철재	1식			
10	당초	341-24	가 옥	블록, 기와	77.8㎡		인천 남동구 고잔로 ***-**	
			가 옥	블록, 스투트	11.1㎡			
			가 옥	블록, 스투트	13.3㎡			
			가 추	목재, 스투트	3.6㎡			
			화 장 실	블록, 스투트	2.5㎡			
			간이화장실	이동식(FRP) 1인용	1식			
			담 장	블록(H=1.8m)	45.9㎡			
			대 문	철재	1식			
10	변경	341-24	가 옥	블록, 기와	77.8㎡		인천 남동구 고잔로 ***-**	
			가 옥	블록, 스투트	11.1㎡			
			가 옥	블록, 스투트	13.3㎡			
			가 추	목재, 스투트	4.2㎡			변경
			화 장 실	블록, 스투트	2.5㎡			
			간이화장실	이동식(FRP) 1인용	1식			
			담 장	블록(H=1.8m)	45.9㎡			
			대 문	철재	1식			
11	변경없음	341-24	가 옥	블록, 기와 함석	81.5㎡	방*설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	
			가 옥	블록, 스투트 함석	37.1㎡			
			가 추	함석	9.9㎡			
			화 장 실	블록, 슬라브	7.2㎡			
			대 문	철재	1식			
			가스배관		1식			
12	변경없음	341-24	가 옥	벽돌, 아스팔트씽글	119.9㎡	방*설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	

			가 옥	벽돌, 슬라브	16.2㎡			
			슈 퍼	벽돌, 아스팔트씽글	28.5㎡			
			등 나 무	30년생	1주			
12-1	변경없음		영업권	(형제슈퍼)	1식	차*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	
13	변경없음	339-16 341-22	울 타 리	웬스(H=1.5m)	27.8㎡	민*순	인천 남동구 고잔로102번길 ** (고잔동)	
			목과나무	25년생	1주			
			은행나무	35년생	1주			
			무 궁 화	35년생	4주			
			관 상 수	10년생	15주			
			장 미	10년생	3주			
			수 국	20년생	1주			
			화 단		1식			
14	변경없음	476-3	담 장	블록(H=1.2m)	4.2㎡	경*옥	인천 남구 도화동 ***-*, ***아파트 *동 ***호	
15	변경없음	476-5	창 고	샌드위치판넬 함석	19.9㎡	김*배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로54번길 ***-**	
			화 장 실	블록, 슬라브	1.2㎡			
			담 장	샌드위치판넬	8.4㎡			
			산 수 유	10년생	1주			
			사철나무	20년생	4주			
			두릅나무	8년생	2주			
			엄 나 무	15년생	4주			
			오동나무	30년생	1주			
			정화조	콘크리트	1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 제21조제1항(어선의 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8월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제목: 어선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어선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17. 08. 17.~ 2017. 09. 01.(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어선내역	소유자	주소	위반내용	위반 일수	최초부과 금액(만원)	사전부과 통지일	반송일
1	태성호(2.05톤, 0111003-6287103)	노*화 (72****)	인천시 남동구 이화로24번길**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5. 31	2017. 06.12
2	용신호(2.57톤, 9903002-628108)	정*숙 (58****)	인천시 남동구 장승남로**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24일	19	2017.05. 31	2017. 06.12
3	우정호(0.91톤, 9802015-6412700)	장*란 외1인 (64****)	인천시 남동구 성말로35번길**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5. 31	2017. 06.12
4	정일호(1.94톤, 0703001-6281857)	장*숙 (68****)	인천시 남동구 앵고개로 941번길**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5. 31	2017. 06.07
5	대광1호(1.05톤, 9803154-6287203)	전*비 (96****)	인천시 남동구 장도로**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12일	7	2017.05. 22	2017. 05.29
6	유성호(4.51톤, 9803128-6287205)	나*숙 (64****)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5. 22	2017. 05.29
7	삼성호(1.27톤, 1108001-6282008)	박*리 (65****)	인천시 남동구 장도로**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5. 22	2017. 05.29
8	삼성호(3.6톤, 0304013-6467702)	민*정 (81****)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84번길**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9일	5	2017.05. 22	2017. 05.29
9	홍영호(1.98톤, 0509012-6467709)	김*섭 (78****)	인천시 남구 인하로 148번길**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5. 22	2017. 05.18
10	대양7호(4.99톤, 0112012-6458005)	정*영 (75****)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5. 11	2017. 05.18
11	은하호(0.77톤, 9803050-6413900)	안*남 (37****)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511번길**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6. 22	2017. 06.29
12	영광호(0.98톤, 9507008-6232007)	김*국 (79****)	인천시 남동구 청능대로**	어선법 제21조위반 (어선검사 지연)	35일 이상	30	2017.06. 22	2017. 06.27

5.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기간 내 남동구 농축수산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남동구 농축수산물 수산자원팀 (☎ 032-453-608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0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8월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정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청소년시설 운영 원칙,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청소년시설 조직, 직원 임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장)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가정복지과 /

☎ 453-5991, FAX 453-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 → 알림마당 → 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년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

☐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청소년시설 운영 원칙,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청소년시설 조직, 직원 임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 등)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남동구 조례 제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활동·지원·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활동, 교육, 문화,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일 경우 일반주민에게도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 일 : 09:00 ~ 21:00
2. 토요일 : 10:00 ~ 18:00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의 조직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민·관 혼합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등에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청소년시설에는 시설별로 시설장 각 1명을 두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겸임한다.

③ 시설장은 시설을 대표하고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①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직원의 채용(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혼합 형태로 운영할 경우 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설장이 임면한다.

-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은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 ③ 시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시설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자격요건) 청소년시설별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시설장 포함)은 별표 2의 직급별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11조(보수 등)** ① 시설별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집행할 수 있다.
- ② 직원의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장 청소년문화의집

제12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청소년의 진로 탐색·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 3. 청소년의 심신 수련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 제공
- 4. 지역주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 제공
-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13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① 문화의집 내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아카데미의 인력 및 운영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제14조(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문화의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시설 운영발전 등을 위해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의집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2. 지역 주민
3. 관계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4. 그 밖에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상·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매년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관내 거주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16조(사업 및 기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기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남동구”라 한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제1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19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그 기능이 유사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20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남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대안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관련 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현황(제4조 관련)

시 설 명	위치
남동 청소년 문화의집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0(만수동)
남동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0(만수동) 남동청소년문화의집 3층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0(만수동) 남동청소년문화의집 3층

[별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시설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9조 관련)

○ 남동청소년문화의집(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인원	자격요건	비고
관 장 【7급 상당】	1명	1.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3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육성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팀 장 【8급 상당】	1명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팀 원 【9급 상당】	1명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기본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25조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의무배치
	1명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u>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u> - 기계 및 전기관련 등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 - 시설관리 등 경력이 있는 자	

※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 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 법 제10조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청소년육성 관련부서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 분장이 되어 있는 부서(읍·면·동 근무경력 및 관리자(부구청장, 구청장, 동장)는 경력인정 미포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인원	자 격 기 준	비 고
센터장 【7급 상당】	1명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팀 장 【8급 상당】	1명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팀 원 【9급 상당】	3명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지도사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관련 행정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구 분	인원	자 격 기 준	비 고
팀 장 【8급 상당】	1명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팀 원 【9급 상당】	1명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설립된 전문 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토구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0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만의골지구 소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공구고시 제2017-79(2017.7.14)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만의골지구 소3-2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4) 및 건설과(453-272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8. 1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140번길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만의골지구 소3-2호선)
 - 명 칭: 만의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규모
 - 소로3-2호선, B=6.0m, L=374.0m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고시일 ~ 2018.7.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변경없음)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123-7	답	74	74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115 ○○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2	53-1	대	13	13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3-1	55-2	대	52	52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3-2	55-1	대	20	20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4	123-11	답	6	6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115 ○○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근저당권	
5	122-4	대	23	23	김○○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				
6	122-3	전	102	102	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56 ○○	*****조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7	729-16	도	399	399	국	국토교통부				
8	57-16	도	129	129	이○○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				
9	59-9	도	24	24	최○○외2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48 ○○				
10	57-15	답	34	34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11	60-14	도	25	25	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1048 ○○				
12	58-12	도	37	37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				
13-1	59-8	전	42	42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00 ○○	*****조합	인천 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13-2	59-7	전	3	3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00 ○○	*****조합	인천 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14	58-11	답	25	25	최기○○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48-14 ○○				
15-1	727-33	천	113	113	국	국토교통부				
15-2	727-34	천	4	4	국	국토교통부				
16	66-5	답	31	31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조합	인천 연수구 옥련동****-*	근저당권 ,지상권	

☐ 지장물 조서(변경있음)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동구 장수동	123-7	바닥	조경석(0.5x0.5)	26.0	ea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	변경없음
			수목	느티나무(H8.0xB50)	1.0	주			
1-1	남동구 장수동	123-7	바닥	목재데크	96.0	m2	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번길 **	변경없음
			담장	목재(H0.5)	15.0	m			
			기타동산	전기시설등	1.0	식			
2	남동구 장수동	55	담장	철재	14.0	m ²	김**	서울특별시 당주동 **	변경없음
3	남동구 장수동	122-2	화장실	조립식	2.2	m2	김**	서울특별시 당주동 ***	변경없음
			주거	블록,기와	68.8	m2			
			계량기		1.0	식			
4	남동구 장수동	122-1	담장	블록	45.0	m	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526-1진달래마을 **	변경없음
5	남동구 장수동	57-13	입간판	쌈밥정식	1.0	ea	이**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목동,*****)	변경없음
			수목	향나무(H2.3xB40)	2.0	주			
			수목	주목	2.0	주			
			수목	버드나무	1.0	주			
5-1	남동구 장수동	57-13	입간판	힐링	1.0	ea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동 ****호(논현동,*****아파트)	변경없음
6	남동구 장수동	58-6	입간판	사랑채	1.0	ea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운연동 **-** 2층	변경없음
			수목	왕벚나무(H5.0xB35)	1.0	주			
			수목	향나무(H1.5xB15)	4.0	주			
			조명		3.0	ea			
			수목	단풍나무	5.0	주			
			수목	장미	4.0	주			
			수목	밤나무	1.0	주			
			수목	소나무	1.0	주			
			조경석		1.0	식			
6-1	남동구 장수동	58-6	입간판	힐링	1.0	ea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동 ****호(논현동,*****아파트)	변경없음
7	남동구 장수동	59-1	담장	동바리,망 (H1.8)	37.0	m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컨벤시아대로 100,***동 ****호	변경없음
			수목	단풍나무(H3.0xB35)	30.0	주			
			수목	옷나무	15.0	주			

			수목	병나무	1.0	주			
8	남동구 장수동	66, 66-1	바닥	소형고압블럭	4.0	m2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	변경없음
			간판1	가나안 돈까스(조명포함)	1.0	ea			
			간판2	철제	1.0	식			
			담장	목재(H0.9)	27.0	m			
			수목	향나무(H1.2xB15)	1.0	주			
			수목	목련(H2.3xB20)	1.0	주			
			수목	능소화(H1.2xB15)	1.0	주			
			수목	촉백나무(H1.5xB10)	40.0	주			
			수목	앵두나무(H2.3xB20)	1.0	주			
			수목	소나무	1.0	주			
			견사	철제 등	1.0	식			
			수도시설이전		1.0	식			
			4쪽대문	목재6.5m	1.0	식			
			조경석	5m	1.0	식			
			기타동산		1.0	식			
9	남동구 장수동	65	담장	철재	2.0	m	운택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	변경없음
				블록	15.0	m			
			대문	철재	1.0	식			
10	남동구 장수동	63-1	담장	웬스(H1.8)	58.0	m	최**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번길 **(괴안동)	변경없음
11	남동구 장수동	71	담장	목재	5.0	m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번길 **	변경없음
			바닥	목재데크	6.0	m ²			
				조경석	10.0	m ²			
12	남동구 장수동	73	담장	목재(H2.0)	24.0	m	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동 ***호	기정
			차양	철골조,천	25.0	m2			
			온수기		1	개			
			바닥콘크리트		6*3	m ²			
			바닥타일		1.5*1.5*1/2	m ²			
			간판	금동이네	1.0	ea			
			가스다이 (파이프해체포함)		2.0	개			
			세탁기		1.0	개			
			김치냉장고		4.0	개			

			야채냉장고		2.0	개			
			영업용냉장고		1.0	개			
			육수통		1.0	개			
			냉동고		1.0	개			
			후황및탁터		1.0	식			
			진열다이		3.0	개			
			바닥타일		1.5*1.5*1/2	m ²			
12	남동구 장수동	73	담장	목재(H2.0)	24.0	m	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22-16 ***동 ***호	변경
			차양	철골조,천	25.0	m2			
			온수기		1	개			
			바닥콘크리트		6*3	m ²			
			바닥타일		1.5*1.5*1/2	m ²			
12-1	남동구 장수동	73	간판	금동이네	1.0	ea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 ***번길 **(장수동)	변경
			가스다이 (파이프해체포함)		2.0	개			
			세탁기		1.0	개			
			김치 냉장고		4.0	개			
			야채 냉장고		2.0	개			
			영업용냉장고		1.0	개			
			육수통		1.0	개			
			냉동고		1.0	개			
			후황및탁터		1.0	식			
			진열다이		3.0	개			
			바닥타일		1.5*1.5*1/2	m ²			
13	남동구 장수동	72	담장	동바리,천	35.0	m	김**	서울특별시 당주동 **	변경없음
14	남동구 장수동	75-1	간판	감나무집	2.0	ea	이**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번길 **,***동 ****호(연희동. **아파트)	기정
			담장	동바리,천(H1.0)	15.0	m			
			차양	천막	32.0	m2			
			바닥	콘크리트	32.0	m2			
			가시설	가시설,천	78.0	m2			
			수목	단풍나무(H3.5xB15)	1.0	주			
			수목	단풍나무(H2.0xB10)	2.0	주			
14	남동구 장수동	75-1	간판	감나무집	2.0	ea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의골로***번길 **	변경
			담장	동바리,천(H1.0)	15.0	m			

			차양	천막	32.0	m2			
			바닥	콘크리트	32.0	m2			
			가시설	가시설,천	78.0	m2			
			수목	단풍나무(H3.5xB15)	1.0	주			
			수목	단풍나무(H2.0xB10)	2.0	주			
			담장	담장	철재난간(H0.9)	14.58			
			바닥	바닥	목재데크	81.5			
			바닥	바닥	보도블럭	55.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과년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과년도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처분목록 참조
4. 공고기간: 2017. 08. 18. ~ 2017. 09. 03.
5. 게시장소: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8월17일**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연번	피부과자	주소지	미배달 사유	위반내용	
				소재지	위반내용
1	정*희	경기도 안산시 상*구 *길 * 식당*층 (사*)	이사불명	간석동189-1외2톤글램핑	무단축조, 근생, 조립식패널, 9㎡
2	최*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양**길 *~2, 2동 *호 (동*동, ***빌)	폐문부재	간석동 53-1, 402호	무단증축, 조립식패널, 주택, 19.93(85㎡이하주거용건축물)
3	백*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로 3*, 1**동 **1호 (논현동, ****단지)	폐문부재	논현동 111-45	경량철골조, 근생, 70㎡, 컨테이너, 36㎡, 무단축조
4	허*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번길 **, 10*동 *0*호 (논현동, *마을)	폐문부재	고잔동 513-1, 6호	무단증축, 컨테이너, 사무소, 133㎡
5	이*백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3*번길 8 *동 ***호 (구월동, **아파트)	폐문부재	구월동 1241번지	근생, 강파이프, 57㎡, 무단증축
6	이*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10*동10*호 (송도동, *****)	폐문부재	논현동 590-5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03.2㎡/ 무단증축, 주택, 경량철골조, 10.5㎡
7	정*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8*번길 *, *0*호 (논현동)	폐문부재	논현동 590-33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80.76㎡
8	김*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6번길 *, *01호 (논현동)	폐문부재	논현동 593-1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61.12㎡
9	김*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1*6번길 *, *01호 (논현동)	폐문부재	논현동 593-1	무단대수선,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61.12㎡
10	고*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10*번길 *7, 나동 *0*호 (동홍동, **빌라)	폐문부재	간석3동 33-5	근생, 무단증축, 조립식패널, 46㎡
11	정*송	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55, *4*동*0*호 (반*동, *탄*루*을 *드*르*양 *도*보*)	폐문부재	논현동 680-1, 384호	무단증축, 근생, 천막파이프, 36㎡
12	유*상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번길 1*2, *0*동 *01호 (논현동, **아파트)	폐문부재	논현동 680-1, 23호	무단증축, 근생, 천막파이프, 10㎡
13	말*이*아* *테*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0번길 **2, *0*동 *1호 (논현동, **아파트)	폐문부재	논현동 680-1, 23호	무단증축, 근생, 천막파이프, 10㎡
14	(주)대*중*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로* (논현동)	폐문부재	논현동 111-344	근생, 천막파이프조, 120㎡, 무단축조
15	강*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길 1* *10동 **0*호 (건건동, 건**편*세*)	폐문부재	논현동 658-3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47.98㎡ 무단대수선
16	강*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길 1* *10동 *0*호 (건건동, 건**편**)	폐문부재	논현동 658-3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247.98㎡ 무단대수선
17	강*영	인천시 남동구 도림로 1* *0*호 (도림동, ***)	폐문부재	도림동 661-6	주택, 경량철골조, 13㎡, 무단증축/ 철근콘크리트조, 81.2㎡, 무단대수선
18	강*신	인천시 서구 가정로 3*7, *0*동 *0*호 (신*동, 신현***아파트)	이사불명	만수동 869-10	무단증축 조립식패널 근생 7.5㎡
19	고*호(신*주*회* 생*부*산*탁)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4*번길 *, *동 *0*호 (마전동, 에스뽕*빌)	폐문부재	간석동 508-115, 504호	무단증축, 주택, 조립식패널, 7.41㎡
20	권*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길 *-* (신길동)	수취인부재	논현동 651-7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51.23㎡, 무단대수선
21	김*숙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20*번길7*, *0*호 (논현동)	폐문부재	논현동 591-21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83㎡, 무단대수선
22	김*희	경기도과천시 별양로 12 3*0동 **0*호 (원문동, *****)	폐문부재	논현동 592-36	주택, 철근콘크리트조, 145㎡ 무단대수선
23	김*분	인천시 남동구 석정로*5*번길 1* 2**동 *반 (간*동)	폐문부재	간석동 589	경량철골구조, 공장, 무단증축, 210㎡
24	김*태	인천시 남동구 호구포로765번길 6*-10 (구월동, 은누*0*빌) *0*호	폐문부재	구월동 1224-10, 502호	주택, 무단증축, 조립식패널, 11.9㎡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13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고잔동 305-2번지 일원(소1-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년8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1-5호선)
 - 명칭: 고잔동 305-2번지 일원(소1-5호선)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1-5호선: B=10.0m, L=187.0m
4.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96-8번지 일원
5. 보상시기: 2017. 9월(예정) ~
6. 보상금지급처: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고잔동 297-8번지 외 12필지
 - 지장물: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2017. 8. 18. - 2017. 9. 4.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도로내	도로외	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1	297-8	대	53	53		53	조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 ***동 ****호(중동,**마을)	(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서잠실지점)	근저당권설정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넋마을****)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목동,**하이패리온)			
2	296-8	묘	601	601		601	조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 ***동 ****호(중동,**마을)	(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서잠실지점)	근저당권설정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넋마을****)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목동,**하이패리온)			
3	304-2	전	52	52		52	조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 ***동 ****호(중동,**마을)	(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서잠실지점)	근저당권설정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넋마을****)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목동,**하이패리온)			
4	305-2	전	228	228		228	오 **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동 ***호(논현동,**메트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작전역지점)	근저당권설정
5	306-25	답	317	317		317	오 **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동 ***호(논현동,**메트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남동공단기 업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남동공단기 업금융센터)	지상권설정
6	304-3	전	5		3	3	조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 ***동 ****호(중동,**마을)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넋마을****)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목동,**하이패리온)			
7	296-21	대	1,73 2		17	17	조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 ***동 ****호(중동,**마을)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 넷마을****)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목동, **하이패리온)			
8	296-19	도	80		19	19	조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 ***동 ****호(중동, **마을)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 넷마을****)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목동, **하이패리온)			
9	305-4	장	331		129	129	심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동 ****호(중동, **마을)			
							임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동 ****호(상동, ***)			
10	306-2	잡	278		17	17	신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수산동)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 (남동 인더스파크지점)	근저당권설정
							신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수산동)			
11	296-20	도	28		3	3	조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279번길 **, ***동 ****호(중동, **마을)	(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서장실지점)	근저당권설정
							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서장실지점)	지상권설정
							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 넷마을****)	(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서장실지점)	합병한 도로 27㎡에대한 이기지상권설정
							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목동, **하이패리온)			
12	305-3	장	658		172	172	오 **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동 ***호(논현동, **메트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가 ** (작전역지점)	근저당권설정
13	306-17	대	590		19	19	오 **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동 ***호(논현동, **메트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가 ***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	근저당권설정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남동구 고잔동	296-8	정자	5.0*3.0	1.0	ea	조**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번길 **, ***동 ****호(중동,**마을)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가로등		2.0	ea	조**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번길 **, ***동 ****호(중동,**마을)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조경수	향나무(H1.5 xB15)	6.0	주	조**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번길 **, ***동 ****호(중동,**마을)	
							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로 **, ***동 ****호(잠실동, ***팰리스)	
2	남동구 고잔동	305-4	건물	RC 슬래브	1.0	동	심**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동 ****호(중동,**마을)	
							임**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동 ****호(상동,**)	
3	남동구 고잔동	305-3	건물	조립식 판넬	1.0	동	오**	인천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 ***동 ***호(논현동,**메트로)	
			천막		190.9	m ²			

의견서

1.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 ..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15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을 위반한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8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가. 공고기간: 2017년 08월 19일 ~ 2017년 09월 07일(20일간)

나. 안내사항

1.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인천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453-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정처분통지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역

◇ 처분통지일: 2017. 08. 07.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발내역	처분내용	비고
1	인천85사1867	김O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동 ****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2017.06.10. 02:42	남동구 은봉로269번길 (가온어린이공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5만원	개별화물
2	인천85사1867	김O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동 ****호(논현동, 논현휴먼시아)	2017.06.16. 02:26	남동구 은봉로255번길 (가온어린이공원 일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3	인천86바8342	이O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동 ****호(만수동, 담방마을아파트)	2017.06.10. 03:24	남동구 도림동 도림아이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4	인천84바9278	장O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23, ***동 ***호(만수동, 남동아파트)	2017.06.24. 02:27	남동구 장승남로 대동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5	인천99아4302	박O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24, ***동 ****호(만수동, 광명아파트)	2017.05.26. 02:31	중구 연안동 바다 쉼터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일반화물
6	인천99아4393	노O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 , ***호(만수동, 시온성다세대주택)	2017.06.24. 02:16	남동구 담방로 한국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7	인천84바9099	박O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 , ***호(만수동, ***빌라)	2017.06.24. 02:40	남동구 담방로 덩동댕유치원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8	인천83바4350	성O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6.24. 02:10	남동구 매소홀로 뉴서울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9	인천81바1456	길O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6.24. 02:16	남동구 담방로 한국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10	인천84바8064	주O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6.24. 02:10	남동구 매소홀로 뉴서울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11	인천84바4056	이O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 ***호(만수동)	2017.04.14. 03:14	아산시 배방읍 용연마을1,2단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12	인천84바8004	전O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간석동)	2017.06.16. 01:24	남동구 예술로 320 앞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13	인천81바8230	박O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간석동)	2017.06.16. 01:27	남동구 예술로 320 앞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16호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부과기준) 규정을 위반한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8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가. 공고기간: 2017년 08월 19일 ~ 2017년 09월 07일(20일간)

나. 안내사항

1.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인천시장에게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문의 사항은 남동구청(☎453-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정처분 사전통지반송분 공시송달공고 내역

◇ 사전통지일: 2017. 06. 3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적발내역	사전처분내용	비고
1	인천81바8618	문○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124-14, ***동 ****호(서창동, 인천서창엘에이치1단지)	2017.07.14. 03:30	남동구 석정중학교 주변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2	인천83바4350	성○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7.14. 02:00	남동구 만수동 금호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3	인천84바8064	주○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7.14. 02:12	남동구 만수동 뉴서울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4	인천81바1456	길○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당방로21번길 61, ***동 ****호(만수동, 뉴서울아파트)	2017.07.14. 01:59	남동구 만수동 금호아파트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개별화물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17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신청 공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17. 8. 28. ~ 9. 8.
2. 신청대상: 남동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잦은 민원발생,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3. 신청방법
 -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 방문(팩스)접수 :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FAX 032-453-2919)
4. 심사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자체평가표)
 - 관련부서 위법사항 여부 협의 및 자체평가
5. 지정 통보 및 지정증, 표지판 교부 : 10월 중
6. 지정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 기 지정 사업자가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 지정취소 함
7.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 구 홈페이지 및 일간지 등 홍보
 - 관용차량 등 모범업체 이용 권장
 - 모범사업자 지정서 및 표지판 부착
 - 구청장 표창 추천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자동차관리팀 453-282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8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관리사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지정 ☐ 재지정
------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17-1419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중로3-307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년8월1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307호선)
 - 명칭: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중로3-307호선)
3. 사업의 규모
 - 중로3-307호선 : B=12.0m, L=750.0m
4.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5. 보상시기: 2017. 9월(예정) ~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도림동 386-11번지 외 22필지
 - 지장물: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2017. 8. 18. - 2017. 9. 4.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소계	잔여면적	소유자		관계자			비고
					도로내	도로외			소유자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도림동	386-11	도	340.0	161.3		161.3	178.7	인천광역시	공				
2	"	386-7	도	1,452.0	1,376.6	-	1,376.6	75.4	인천광역시	공				
3	"	386-10	도	44.0	44.0	-	44.0	-	인천광역시	공				
4	"	401-6	도	261.0	242.8		242.8	18.2	기획재정부	국				
5	"	399-3	도	530.0		37.5	37.5	492.5	인천광역시	공				
6	"	399-6	도	565.0	530.7		530.7	34.3	인천광역시	공				
7	"	617	도	18,756		14.0	14.0	18,742.0	건설부	국				
8	"	617-56	도	126.0	112.9		112.9	13.1	건설부	국				
9	"	617-58	도	73.0	73.0		73.0	-	건설부	국				
10	"	617-59	도	832.0	472.8		472.8	359.2	건설부	국				
11	"	404-1	도	499		177.0	177.0	322.0	인천광역시	공				
12	"	404-3	도	1,582.0	1,565.3		1,565.3	16.7	인천광역시	공				
13	"	412-36	도	106.0		11.0	11.0	95.0	인천광역시	공				
14	"	412-35	도	2,177.0	2,177.0		2,177.0	-	인천광역시	공				

15	"	412-34	공	8.0	8.0		8.0	-	남동구	공				
16	"	412	공	25,130.0		94.8	94.8	25,035.2	남동구	공	한국**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	합병한 공원 15810㎡에 대한 이기 지상권 설정	
17	도림동	346-9	도	750.0	251.9		251.9	498.1	건설부	국				
18	"	산 62-9	임	77.0	77.0	-	77.0	-	두**	인천시 남구 남주길**번길 *-*, ***호(주안동,경신빌라)				
19	"	647	도	286.0	286.0	-	286.0	-	기획재정부	국				
20	"	412-19	임	139.0	128.3	-	128.3	10.7	노**	인천시 남구 관교동 ***-* *층				
21	"	412-37	과	114.0	114.0	-	114.0	-	이**	인천시 남동구 문화서로*번길 **(구월동)	한국**공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구분지상권	
									김**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푸르지오하버뷰)				
									강**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로 **, ***동 ****호(논현동, 넷마을****)				
22	"	386-9	도	49.0	45.0	-	45.0	4.0	인천광역시	공				
23	"	403-3	전	1.0	1.0	-	1.0	-	강**	남동구 논고개로**번길 **,***동 ****호 (논현동,인천논현*****)	인천*** 협동조합	인천시 남구 경인로 *** (주안동) (구월지점)	근저당권 구분지상권	
소 계				53,897	7,667.6	334.3	8,001.9	45,895.1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 입 (㎡)	수 량 (개소)	소유자		비 고
	구	동						성 명	주 소	
1	남동	도림	401-3	비닐하우스	6.28 × 5.50	24.7		신**	인천시 남동구 도림로**번길 **, *동 ***호(도림동,**빌라)	전체32.0㎡
2	남동	도림	399-3	비닐하우스	10.3 × 2.80	21.8		김**	인천시 남동구 비류대로***번길 *** (도림동)	전체22.0㎡
3	남동	도림	399-3	비닐하우스	9.00 × 6.60	41.4		김**	인천시 남동구 비류대로***번길 *** (도림동)	전체49.0㎡
4	남동	도림	412-5	입간판	2.00 × 5.00		1.0	두**	인천시 남구 남주길**번길 *-*, ***호(주안동,**빌라)	
				관상수 (H=1.20m)			35.0			

의견서

1.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7. ..

의견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제2017-19호

지방의회 청렴도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2017. 8.
- 제공받는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경제사회단체 등 지역주민,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소속직원·산하기관 직원, 경제사회단체 등 지역주민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2017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2017년8월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공고제2017-20호

공 시 송 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관련 의정활동비 이중지급(휴대전화 사용료)에 따른 반납액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불능인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기 2017.8.31.일을 2017.9.30.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8월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장

1. 공고기간: 2017. 8. 14. ~ 8. 29. (15일간)

2. 공고대상

납부자명	공고내용	주소 또는 거소	부과금액	공시송달 사유	비고
안**태	휴대전화 사용료 반납 고지서 공시송달	인천 남동구 용천로 200, 4-*** (간석동, **아파트)	1,679,140원	폐문부재	

3. 게시장소: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4.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의정팀(☎032-453-5023)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남동구 의회사무국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위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17-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 등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8월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등록 취소 공고
2. 공고기간: 2017. 08. 14. ~ 2017. 08. 27. (14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재지	비고
1	식품제조 가공업	2016-0199334	서산간장게장	황*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15-22, 1층(만수동)	

4. 처분내용: 영업등록 취소
5. 행정처분일: 2017.08.08.
6. 처분사유: 시설물 멸실
7.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